

食品衛生法の 變遷過程(3)

— 食品衛生法施行規則 —

가. 食品衛生法施行規則의 制定

(1) 公 布 : 1962.10.10(보건사회부령 제91호)

(2) 構 成 : 3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3) 內 容

제 1 조(무해한 식품 및 첨가물)

제 2 조(판매금지 獸畜의 질병 및 例外 獸畜의 지정)

제 3 조(표시의 기준)

제 4 조(제품검사의 신청서식)

제 5 조(제품검사의 방법)

제 6 조(제품검사 시험재료의 단위와 검체량)

제 7 조(제품검사 수수료)

제 8 조(제품검사 합격증 및 그 표시)

제 9 조(수입승인 신청서식)

제 10 조(수거증과 식품위생감시원증)

제 11 조(검사의 방법)

제 12 조(식품위생관리인에 관한 신고서식)

제 13 조(유형영업업종)

제 14 조(유형영업종사자의 정의)

제 15 조(등록신청등)

제 16 조(등록증)

제 17 조(접객부의 요건)

제 18 조(접객부의 준수사항)

제 19 조(유형영업자의 준수사항)

제 20 조(등록의 취소등)

제 21 조(건강진단의 구분)

제 22 조(건강진단사항)

제 23 조(건강진단의 실시)

제 24 조(보건증)

제 25 조(건강진단 수수료)

제 26 조(업종별 시설기준)

제 27 조(영업허가의 신청서식)

제 28 조(영업허가 수수료)

제 29 조(영업의 양도, 상속허가)

제 30 조(허가유효기간)

제 31 조(영업허가증)

제 32 조(허가사항의 변경)

제 33 조(영업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 34 조(제조등 품목의 변경허가)

제 35 조(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요령)

제 36 조(건강상 유해한 玩弄品)

나. 1次改正

- (1) 公 布 : 1963. 1. 8(보건사회부령 제100호)
- (2) 主要内容
 - (가) 영업의 허가를 할 때 다음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특정의래품판매금지법에 의하여 특정의래품으로 지정된 식품을 취급하지 말 것.
 - 영업의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지 아니할 것.
 - 영업의 운영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대행시키지 아니할 것.
 - (나) 두루전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

다. 2次改正

- (1) 公 布 : 1963. 3. 2(보건사회부령 제101호)
- (2) 主要内容
 - 제37조(조리사를 두지 아니하는 음식점)의 신설
 - 객석이 50석이하인 酒店
 - 1일평균 100食이하의 식사를 공급하는 식당
 - 1회평균 30食이하의 식사를 공급하는 여관

라. 3次改正

- (1) 公 布 : 1963. 5. 9(보건사회부령 제108호)
- (2) 主要内容
 - (가) 제13조와 관련하여 유흥영업의 업종을 재분류하고 업종의 정의를 내림.
 - (나) 제28조(영업허가수수료) 1항의 “당해 서울특별시 또는 도 條例로 정하는 영업허가수수료”를 “별표”에 규정함.

마. 4次改正

- (1) 公 布 : 1963. 9.30(보건사회부령 제121호)
- (2) 主要内容
 - 식품영업에 관한 허가수수료의 변경

바. 5次改正

- (1) 公 布 : 1964. 6.11(보건사회부령 제137호)
- (2) 主要内容
 - (가) 제품검사수수료의 조정
 - (나) 제품검사용 시료채취량의 조정
 - (다) 첨가물제조업의 작업장 면적을 규정함(작업장 : 80평방미터이상, 창고 : 10평방미터이상)

사. 6次改正

- (1) 公 布 : 1964. 9.23(보건사회부령 제144호)
- (2) 主要内容
 - 제 3 조(표시의 기준)에 다음의 내용을 신설했.
 - “다만, 수출에 있어서는 수출대상국의 국문을 병기할 것”

아. 7次改正

- (1) 公 布 : 1966.10.20(보건사회부령 제186호)
- (2) 主要内容
 - (가) 유흥영업업종에 “빠 또는 요리점”을 추가함.
 - (나) 음식점영업의 시설기준을 조정함.

자. 8次改正

- (1) 公 布 : 1967.12.30(보건사회부령 제209호)
- (2) 主要内容
 - (가) 화학적 합성품을 별표 11에 규정

함(총224종)

- (나) 음식점영업 과자류제조업, 시설기준을 개정하고 가공유제조업 단무지제조업, 식초제조업, 간이음식점영업 등의 시설기준을 신설함.
- (다) 별표 5 (검사사항 및 배점)을 개정함.

차. 9次改正

- (1) 公 布 : 1968. 6.10(보건사회부령 제220호)
- (2) 主要内容
 - (가) 영업의 양도, 상속허가를 신고로 함.
 - (나) 제30조(허가의 조건)에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업을 할 것”을 추가함.

카. 10次改正

- (1) 公 布 : 1968. 8. 1(보건사회부령 제229호)
- (2) 主要内容
 - (가) 제3조(표시의 기준)에 “파·용량, 중량 또는 개수”를 신설하여 표시를 의무화함.
 - (나) 청량음료수제조업의 시설기준을 개정하여 보완함.

타. 11次改正

- (1) 公 布 : 1969. 7.15(보건사회부령 제327호 : 전문개정)
- (2) 構 成 : 4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가) 內 容
 - 제 1 조(무해한 식품 및 첨가물)
 - 제 2 조(판매금지수축의 질병 및 예외수축의 지정)
 - 제 3 조(화학적합성품의 지정)
 - 제 4 조(표시의 기준)

- 제 5 조(식품검사의 신청서식)
- 제 6 조(제품검사의 방법)
- 제 7 조(제품검사이험재료의 단위(양)와 검사량)
- 제 8 조(제품검사 수수료)
- 제 9 조(제품검사합격 및 그 표시)
- 제10조(수입신고서식)
- 제11조(수거증과 식품위생감시원증)
- 제12조(검사의 방법)
- 제13조(식품위생관리인에 관한 신고서식)
- 제14조(유통영업의 업종)
- 제15조(유통영업종사자의 정의)
- 제16조(등록신청등)
- 제17조(등록증)
- 제18조(접객부의 요건)
- 제19조(접객부의 준수사항)
- 제20조(유통영업자의 준수사항)
- 제21조(등록의 취소등)
- 제22조(건강진단의 구분)
- 제23조(건강진단사항)
- 제24조(건강진단의 실시)
- 제25조(보건증)
- 제26조(건강진단수수료)
- 제27조(업종별 시설기준)
- 제28조(영업의 인정)
- 제29조(영업허가의 신청서식)
- 제30조(영업허가 수수료)
- 제31조(영업의 양도, 상속의 신고)
- 제32조(허가의 조건)
- 제33조(영업허가증)
- 제34조(허가사항의 변경)
- 제35조(영업의 개업·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 제36조(제조품목허가)
- 제37조(영업시설개수명령서의 교

- 부)
- 제38조(허가사항보고)
- 제39조(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요령)
- 제40조(완통품의 지정)
- 제41조(조리사를 두지아니하는 음식점)
- 별표 1 (지정된 화학적 합성품 : 224종)
- 별표 6 및 7 (식품위생감시원의 검사사항)
- 별표 8 (업종별 시설기준)
- 별표 9 (식품영업에 관한 허가수수료)

파. 12次改正

- (1) 公 布 : 1970. 4.13(보건사회부령 제347호)
- (2) 主要内容
지정된 화학적합성품중에서 글루콘산 등 16종을 삭제하고 5'-구아닐산나트륨등 17종을 추가하여 총 225종의 화학적합성품을 지정함.

하. 13次改正

- (1) 公 布 : 1970.11.23(보건사회부령 제362호 : 전문개정)
- (2) 構 成 : 3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3) 內 容
 - 제 1 조(목적)
 - 제 2 조(무해한 식품 및 첨가물)
 - 제 3 조(판매금지수축의 질병)
 - 제 4 조(화학적합성품의 지정)
 - 제 5 조(표시의 기준)
 - 제 6 조(제품검사의 신청)
 - 제 7 조(시험재료의 채취등)
 - 제 8 조(제품검사방법)

- 제 9 조(제품검사합격표시)
- 제10조(식품등의 수입신고등)
- 제11조(수거증과 식품위생감시원증)
- 제12조(임검의 방법)
- 제13조(식품위생관리인에 관한 신고서식)
- 제14조(유통영업의 업종)
- 제15조(유통영업의 종사자의 범위)
- 제16조(접객부 등록신청서)
- 제17조(접객부 등록증)
- 제18조(접객부의 요건)
- 제19조(유통영업자의 준수사항)
- 제20조(등록의 취소등)
- 제21조(건강진단)
- 제22조(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질병의 종류)
- 제23조(업종별 시설기준)
- 제24조(영업의 인정)
- 제25조(영업허가의 신청서식)
- 제26조(영업허가 수수료)
- 제27조(영업허가증)
- 제28조(허가사항의 변경)
- 제29조(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의 신고)
- 제30조(영업의 개업·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 제31조(제조품목허가)
- 제32조(제조품목허가사항 변경)
- 제33조(영업허가의 보고)
- 제34조(시설개수명령서 및 영업정지명령서)
- 제35조(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요령)
- 별표 1 (화학적합성품 : 250종)
- 별표 2 (표시대상식품 및 첨가물)
- 별표 3 (착향료원료)
- 별표 4 (첨가물의 용도구분)
- 별표 5 (제품검사용시험재료의 채취

- 단위 및 채취량)
- 별표 6 (제품검사합격증지교부수수료)
- 별표 7 (업종별 시설기준)
- 별표 8 (식품영업허가 수수료)

- 평방미터이상에서 50평방미터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 (사) 면류제조업에 완전히 구획된 상당한 넓이와 내구력이 있는 건조장을 유지하도록 규정함.

거. 14次改正

- (1) 公 布 : 1972. 1. 5(보건사회부령 제387호)
- (2) 主要内容
 - (가) 제조업·가공업·처리업 시설기준에, 원료 및 제품의 실험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설을 구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그 명세를 명기함.
 - (나) 업종별 시설기준 중에서 병과제조업, 두부제조업등 9종의 제조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개정함.

너. 15次改正

- (1) 公 布 : 1973. 1.12(보건사회부령 제406호)
- (2) 主要内容
 - (가) 제조품목허가사항 변경대상에서 “용도·용법·포장단위”를 삭제함.
 - (나) 화학적합성품에서 과망간산칼륨, 살리실산을 삭제하고 염기성알루미늄탄산나트륨 및 핵산을 신설함.
 - (다) 착향료원료중에서 “쿠마린 및 그 유도체”를 삭제함.
 - (라) 첨가물의 용도구분(합성보존료)에서 “살리실산”을 삭제함.
 - (마) 실험실에 갖추어야 하는 설비와 기타 필요한 기기, 기구 및 시약류를 재정비함.
 - (바) 두부류제조업의 작업장면적을 30

더. 16次改正

- (1) 公 布 : 1973. 9.26(보건사회부령 제422호)
- (2) 主要内容
 - (가) “과대광고의 범위등” 및 “허위표시의 범위”를 신설하여 규정함.
 - (나) 제12조(임검의 방법)을 (위생등급)으로 개정하여 위생등급을 “가”와 “나”로 분류하였으며 ②항에(임검회수)를 명시하였음.
 - (다) “소분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음.
 - (라) “위생강습”을 신설하여 교육의 횟수, 시간, 내용등을 규정함.
 - (마) “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
 - (바) 화학적합성품중 수산화나트륨액, 식용색소적색 제40호를 신설하고, 식용색소자색 1호등 4개 품목을 삭제함.

러. 17次改正

- (1) 公 布 : 1975. 2.18(보건사회부령 제467호)
- (2) 主要内容
 - 업종별시설기준중 간이음식점영업시설기준을 보완함.

머. 18次改正

- (1) 公 布 : 1975. 7. 8(보건사회부령 제483호)
- (2) 主要内容
 - (가) 두부류에 있어서 그 운반상자 및

보관용기에 제조소의 소재지 및 제조업소명, 영업허가번호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유는 제조일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나) 식초에 있어서 초산함량 및 합성식초, 양조식초 또는 혼성식초의 구별과 혼성식초에 있어서는 양조식초 및 합성식초의 혼합비율을 표시하도록 함.
- (다) 과대광고등의 범위에 “외래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인 모델을 등장시키는 방법으로 혐오감을 주는 광고”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도안, 음향등을 사용하는 저속한 광고”등을 추가함.
- (라) 조건부 영업허가의 시효를 6개월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6월을 한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마) 화학적합성품중 “아크릴산아미드”를 삭제하고 “글리실리친산2나트륨”등 6품목을 신설함.

거. 19次改正

- (1) 公 布 : 1976. 1. 6(보건사회부령 제507호)
- (2) 主要内容
 - (가) 유흥음식점영업의 종류, 유흥종사자등의 범위등, 접객부 등의 조항을 조정함.
 - (나) 제19조의(유흥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음식점영업자등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그 내용을 보완함.
 - (다) 화학적합성품중 “면류첨가알카리제” “D-소르비톨액” “합성팽창제” 및 “수산화나트륨액”을 각각 삭제함.

- (라) “음식점영업·유흥음식점영업·특수유흥음식점영업·다과점영업시설기준”을 “식품접객영업시설기준”으로 하고 그 내용을 정리·보강함.

서. 20次改正

- (1) 公 布 : 1976. 2. 4(보건사회부령 제509호)
- (2) 主要内容
 - 표시의 기준과 관련하여 제조업소명 외에 판매업소명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판매업소명은 제조업소명의 표시와 같거나 그보다 작은 글씨의 자체로 표시하도록 하였음.

어. 21次改正

- (1) 公 布 : 1976. 7. 3(보건사회부령 제530호)
- (2) 主要内容
 - (가) 분말청량음료에 있어서 천연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분말청량음료” 천연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천연분말청량음료”, 주스류에 있어서 천연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그 함유된 과즙의 “명칭 및 함량”, 천연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천연청량음료”로 표시하도록 함.

- (나)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식품 또는 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저. 22次改正

(1) 公 布 : 1977. 4.30(보건사회부령 제560호)

(2) 主要内容

(가) 과대광고의 범위에 “경품판매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를 추가하였음.

(나) 과대포장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음.

- 내용물이 포장용적의 3분의 2에 미달되는 경우
- 포장한 2이상의 제품을 다시 1개로 재포장한 것으로서 그 실제 내용물이 재포장용적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저. 23次改正

(1) 公 布 : 1977.12.23(보건사회부령 제586호)

(2) 主要内容

(가) 표시의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신설함.

- 부패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관리상의 주의사항
- 부패변질품에 대한 반품 또는 교환장소

(나) 영양강화식품제조업을 영양식품제조업으로 , 고추가루등 제조업을 조미료제조업으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함.

저. 24次改正

(1) 公 布 : 1978. 6.20(보건사회부령 제600호)

(2) 主要内容

표시기준중 제조 또는 수입년월일의 표시에 다음과 같은 단서조항을 신설함.

- 아이스크림류와 부패, 변질의 우려

가 없고 포장단위가 극히 작은 제품의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청량음료(유산균음료제외)에 있어서 병마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년월만을, 우유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저. 25次改正

(1) 公 布 : 1978.10.25(보건사회부령 제611호)

(2) 主要内容

화학적합성품에 아스코르빌파르미테이트와 염화칼륨을 신설함.

저. 26次改正

(1) 公 布 : 1979. 8.20(보건사회부령 제630호)

(2) 主要内容

화학적합성품에서 잔탄검을 삭제하고 에칠렌옥사이드와 폴리소르베이트를 신설함.

저. 27次改正

(1) 公 布 : 1980. 4. 1(보건사회부령 제644호)

(2) 主要内容

화학적합성품에 실리코알루미늄산나트륨을 신설함.

저. 28次改正

(1) 公 布 : 1980. 8.28(보건사회부령 제655호)

(2) 主要内容

화학적합성품에 이디티에이칼슘나트륨과 이디티에이2나트륨을 신설함.

노. 29次改正

- (1) 公 布 : 1981. 7. 2(보건사회부령 제677호 : 전문개정)
- (2) 構 成 : 전문43조 및 부칙 별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3) 內 容
 - 제 1 조(목적)
 - 제 2 조(해로움이 없는 식품 및 첨가물)
 - 제 3 조(판매금지동물의 질병)
 - 제 4 조(자가품질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 제 5 조(표시의 기준등)
 - 제 6 조(과대광고등의 범위)
 - 제 7 조(제품검사의 신청)
 - 제 8 조(시험재료의 채취등)
 - 제 9 조(제품검사방법)
 - 제10조(제품검사합격표시)
 - 제11조(식품등의 수입신고)
 - 제12조(입검)
 - 제13조(수거량·수거증등)
 - 제14조(검사의뢰)
 - 제15조(검사결과보고)
 - 제16조(식품위생관리인의 신고)
 - 제17조(식품, 첨가물의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 제18조(유통종사자의 범위)
 - 제19조(음식점영업자등의 준수사항)
 - 제20조(소분업의 정의)
 - 제21조(건강진단)
 - 제22조(위생강습)
 - 제23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 제24조(업종별 시설기준)
 - 제25조(위생등급)
 - 제26조(영업허가등의 신청)
 - 제27조(조건부 영업허가의 이행조건)
 - 제28조(영업허가증등)

- 제29조(허가사항등의 변경)
- 제30조(제조품목허가)
- 제31조(제조품목허가사항 변경)
- 제32조(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 제33조(영업허가의 보고)
- 제34조(시설개수명령서 및 영업정지명령서)
- 제35조(행정처분의 기준)
- 제36조(청문의 절차)
- 제37조(행정처분대상등)
- 제38조(조리사자격시험)
- 제39조(조리사의 면허)
- 제40조(조리사면허증의 반납등)
- 제41조(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
- 제42조(동업자조합설립보고)
- 제43조(수수료)
- 별표 1 (자가품질기준 및 규격의 검정기준)
- 별표 2 (식품·첨가물·기구·용기 및 포장의 표시기준)
- 별표 3 (제품검사용 시험재료의 채취단위 및 채취량)
- 별표 4 (제품검사합격증지교부 수수료)
- 별표 5 (식품등의 수입신고절차와 기준)
- 별표 6 (영업별 입검회수)
- 별표 7 (입검지도 중점사항 및 채점 기준)
- 별표 8 (식품등의 수거량)
- 별표 9 (업종별 시설기준)
- 별표 10 (행정처분기준)
- 별표 11 (영업허가 및 제조품목허가 등의 수수료)

도. 30次改正

(1) 公 布 : 1981. 8.31(보건사회부령 제683호)

(2) 主要内容

업종별시설기준중 식육판매업의 시설 기준에서 포장육(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커트미트를 말한다)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점포의 바닥을 타일, 콘크리트등 내수성자재로 하여야 한다.
- 점포에는 종업원 전용의 위생적인 손씻는 시설과 식육 및 기구류의 전용세척시설이 있어야 한다.

사항을 추가 신설함.

·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및 일정규모 이상의 업소에 한하여 위생제복을 착용케 함.

· 조명도 유지 및 시설의 임의변경금지

· 가격표의 부착 및 준수

(다)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에 “성병”을 추가함,

(라) “청문의 절차”를 보다 구체화 함.

로. 31次改正

(1) 公 布 : 1982. 5.22(보건사회부령 제703호)

(2) 主要内容

(가) 도지사가 지정하는 토산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통시설기준중 작업장 및 창고의 환기시설로서 바닥면적의 15%이상의 창구시설을 갖추도록 한 것을 5%이상으로 하향조정함.

보. 33次改正

(1) 公 布 : 1983. 6.10(보건사회부령 제731호)

(2) 主要内容

행정처분기준중 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에서 영업자가 미성년자의 출입을 거부하지 않았거나(유흥음식점 영업에 한함),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제공을 거부하지 않았을 때 종래의 15일 영업정지에서 영업정지 15일 내지 30일로 강화함.

(이때 출입자의 연령을 증명서로 확인하도록 함)

모. 32次改正

(1) 公 布 : 1983. 1.15(보건사회부령 제719호)

(2) 主要内容

(가) 과대광고등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품의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를 추가함.

(나) 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다음

소. 34次改正

(1) 公 布 : 1984. 6. 8(보건사회부령 제746호)

(2) 改正理由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1409호, 1984. 4.13)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리하고, 음식점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음식을 팔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主要内容

(가) 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국

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지 말고, 주문식단체를 지키도록 함(영 제19조제21호·제23호).

- (나) 성분은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고 향만으로 그 맛을 내는 제품은 그 맛이 향으로 인한 것임을 표시하도록 함(영 별표 2).
- (다) 두부류는 운반상자 및 보관용기에 중량·용량 또는 개수를 표시하도록 함(영 별표 2).
- (라) 식품등의 검사에 필요한 검체의 수거량을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조정함(영 별표 2).
- (마) 영업장소안에 10룩스(유홍음식점의 경우에는 3룩스) 미만으로 낮출 수 있는 촉광조절장치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영 별표 9).

오. 35次改正

(1) 公 布 : 1985. 2.18(보건사회부령 제764호)

(2) 改正理由

유통식품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식품접객업소의 변태·퇴폐영업행위등의 근절을 기하기 위하여 식품의 표시기준과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등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3) 主要内容

- (가) 식품영업의 영업소에 임검을 실시한 때에는 임검지도기록부에 임검결과를 기재하여 비치하도록 함(영 제12조제3항).
- (나) 음식점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종업원에 대하여 위생강습을 받게 할 의무를 추가함(영 제19조).
- (다) 식품영업의 허가사항중 허가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함(영 제29조).

- (라) 특정성분을 제품명칭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성분이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하는 식품등의 성분배합기준에 규정된 기준함량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외국제품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하여 만든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제품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하여 만든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제품명칭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영 별표 2).
- (마) 과자류·면류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에 대하여는 그 유통기한을 연·월·일 또는 연·월로 표시하도록 함(영 별표 2).
- (바) 식품영업에 관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후 동일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가중처분하는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업의 양도전에 행하여진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동일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고도 변태적으로 영업을 양도하여 가중처분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함(영 별표 10의 I).
- (사) 시간외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경고에서 영업정지 7일로 강화함(영 별표 10의 II).

조. 36次改正

(1) 公 布 : 1985. 7. 1(보건사회부령 제767호)

(2) 改正理由

축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허가업무가 농수산부에서 보건사회부로 이관되고, 식품관계업종이 통·폐합됨(대통령령 제11717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중개정령 1985. 7. 1)에 따라 업종별 시설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식품검사제도, 식품등의 표시기준등을 일부 보완·강화하려는 것임.

(3) 主要内容

- (가) 다류의 품질기준 및 규격을 공정기준 및 규격으로 하였으므로 자가품질기준 및 규격을 설정하여야 할 대상식품에서 제외함(영 제4조).
- (나)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결과 폐기대상으로 인정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검사의뢰기관에만 검사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식품의 허가관청에도 동시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그 식품을 조속히 폐기조치할 수 있도록 함(영 제15조).
- (다) 식품첨가물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중 종전에는 월 2회 이상 자가시험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 1회이상 하도록 하여 자가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함(영 제17조제4호).
- (라) 식품소분업의 금지대상에 다류·유제품·식품첨가물인 감미료 및 영양등 식품을 추가하여 이들 식품등의 불량품 발생을 예방함(영 제20조).
- (마) 식품영업소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에 간염을 추가함(영 제23조).
- (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식품첨가물의 사용용도를 표시하도록 하여

식품에 첨가물이 어떤 용도로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함(영 별표 2).

- (사)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장은 객석에서 조리장의 내부를 잘 볼 수 있는 구조로 설비하도록 하고, 조리장에는 식기류등의 살균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영 별표 9).

- (아) 농수산부로부터 그 허가업무가 이관된 선상수산물제조가공업등 축·수산물가공식품제조업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업종 통·폐합에 따라 시설기준을 일부 조정·정비함(영 별표 9).

초. 37次改正

(1) 公 布 : 1985.10.28(보건사회부령 제773호)

(2) 改正理由

유통식품의 부패·변질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유통기한표시제도를,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보건사회부령 제764호, 1985. 2. 18)으로 동규칙 공포후 1년6월이 경과한 날, 즉 1986년 8월 18일부터 실시하도록 하였던 바, 국민보건증진과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서울올림픽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고자 그 원활한 시행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1986년 3월 1일 이후 시험 표시기간을 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主要内容

- (가) 식품별 유통기한 표시제도의 원활한 시행준비를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986년 3월 1일 이후 시험

표시기간을 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나) 종전에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년·월·일” 또는 “년·월”로만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조일로부터 ○○일”의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2).

코. 38次改正

(1) 公 布 : 1987. 3.28(보건사회부령 제798호 : 전문개정)

(2) 構 成 : 전문59조 및 부칙, 별표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3) 改正理由

식품위생법의 개정(1986. 5. 10 법률 제3823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86. 11. 11 대통령령 제12000호)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제도·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4) 主要內容

(가) 식품등의 식품포장에 대한 표시기준중 제조연월일의 표시부위를 제품포장의 오른쪽 아래로 정하고, 수입식품에 대하여는 종래 수입업소명·수입연월일등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제조연월일도 표시하도록 하는 등 국내에서 제조된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동일 수준으로 표시기준을 강화함(영 제5조 및 별표 1).

(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는 경우를 동일 시·군·구 또는 동일 공업단지내에 있는 집단급식소로 정하고,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는 경우에는 1인의 영양사에 대하여 급식인원 600인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함(영 제45조).

(다) 종전에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품목제조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껌·백설당·김치류·임가공식품등에 대하여는 품목제조허가없이 제조할 수 있도록 함(영 제24조 및 별표 8).

(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미만의 원료를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 그 원료를 표시하는 도안이나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의 성분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행위를 금지함(영 제6조제2항).

(마)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는 자는 매일 식품자동판매기의 위생상태 또는 고장등의 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한 내용을 아크릴로 된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쉬운 곳에 상시 비치하도록 함(영 제20조 및 별표 7).

(5) 內 容

제 1 조(목적)

제 2 조(판매등이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제 3 조(판매등이 금지되는 병육)

제 4 조(자가기준 및 규격)

제 5 조(표시기준 등)

제 6 조(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제 7 조(제품검사의 신청등)

제 8 조(검체의 채취등)

제 9 조(제품검사의 방법등)

제10조(제품검사의 합격표시)

제11조(식품등의 수입신고)

제12조(임검등)

제13조(수거량, 검사의뢰 등)

제14조(검사방법 등)
 제15조(검사결과와 보고등)
 제16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제17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8조(검사대장의 비치)
 제19조(자가품질검사)
 제20조(업종별 시설기준)
 제21조(식품소분업의 허가대상)
 제22조(영업허가의 신청)
 제23조(허가사항의 변경)
 제24조(품목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
 제25조(품목제조허가)
 제26조(품목제조허가사항의 변경)
 제27조(영업의 신고등)
 제28조(신고사항의 변경)
 제29조(휴업등의 신고)
 제30조(조건부 영업허가)
 제31조(조건이행의 신고등)
 제32조(영업허가등의 보고)
 제33조(영업자지위 승계신고)
 제34조(건강진단 대상자)
 제35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제36조(위생교육대상자)
 제37조(위생교육기관등)
 제38조(식품위생관리인의 수)
 제39조(식품위생관리인의 선임·해임 신고)
 제40조(식품 및 첨가물의 제조 또는 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제41조(생산실적등의 보고)
 제42조(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제43조(위생등급)
 제44조(영양사의 직무등)
 제45조(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 범위)

제46조(조리사의 면허신청등)
 제47조(면허증의 재교부등)
 제48조(조리사의 면허증의 반납)
 제49조(조리사 및 영양사 보수교육의 교육대상자)
 제50조(보수교육의 방법등)
 제51조(신고하여야 할 정관변경사항)
 제52조(압류등)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54조(영업소폐쇄등의 게시)
 제55조(행정처분대상 등)
 제56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제57조(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
 제58조(집단급식소의 신고등)
 제59조(수수료)
 별표 1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기준)
 별표 2 (제품검사용 시험재료의 채취단위 및 채취량)
 별표 3 (제품검사합격증지교부 수수료)
 별표 4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
 별표 5 (영업별 임검회수)
 별표 6 (식품등의 수거량)
 별표 7 (업종별 시설기준)
 별표 8 (품목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대상품목)
 별표 9 (식품 및 첨가물을 제조 또는 가공업자의 준수사항)
 별표 10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별표 11 (식품접객영업소의 위생등급 기준)
 별표 12 (행정처분기준)
 별표 13 (수수료)

토. 39次改正

(1) 公 布 : 1988. 3. 4(보건사회부령 제814호)

(2) 改正理由

인삼사업법의 적용을 받던 백삼제품이 인삼사업법시행령의 개정(1987. 3. 26, 대통령령 제12098호 및 1987. 7. 13 대통령령 제12214호)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개정(1987. 7. 13 대통령령 제12213호)으로 인삼사업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동 인삼제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主要内容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규격에 따라 제조·가공하게 하되 그 기준과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자가 기준 및 규격대상식품으로 인정한 식품에 대하여는 당해 식품의 제조·가공업자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그 기준과 규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인삼제품을 자가기준 및 규격대상식품에 포함하여 인삼제품의 품질유지 및 그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영 제 4조).

(나)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수입신고시 종전에는 수출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수입식품등의 함량표시 의무를 완화함에 따라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현행 제11조 제1항 사목 삭제).

(다) 식품 또는 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서 재포장하는 식품소분업의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에 식육제품·어육연제품·조사처리식품·인삼제품을 추가하여 소분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도록 함(영 제21조).

(라) 종전에는 식품에 원칙적으로 한글 표시만을 하도록 하던 것을 외국인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용기 또는 포장의 다른면에 표시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외국어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1).

(마) 인삼제품에 대한 검사시 필요한 시험용재료의 채취단위, 채취량과 채취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별표 2).

(바) 인삼제품제조·가공업에 대한 작업장면적과 제품종류별 기구·기계 및 설비등의 시설기준을 정함(영 별표 7).

(사) 시·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의 식품접객·조리판매업소의 화장실에는 손을 씻은후 손을 말리거나 손을 닦는 시설을 갖추도록 함(영 별표 7).

(아) 식품 및 첨가물의 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접객조리·판매영업자는 식품 및 첨가물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고무장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살색 또는 백색의 고무장갑을 사용하도록 함(영 별표 9 및 별표 10).

포. 40次改正

(1) 公 布 : 1989.11.30(보건사회부령 제835호)

(2) 改正理由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부의 개방화·자율화시책의 추진에 따라 관련 식품산업의 건전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식품의 표시제도등 일부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3) 主要内容

(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동·식물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원료로 하는 식품을 자가기준과 규격을 설정하여야 하는 식품의 범위에 추가하여 이들이 그 기준과 규격에 의하여 식품으로서의 안전성과 건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으로 허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1항제3호).

(나) 식품의 표시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제조일만을 표시하는 식품(과자류, 조미식품등)과 제조일 및 권장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하는 식품(빵류, 우유, 통조림등)으로 2원화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정부의 개방화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산식품의 국제경쟁여건조성 등 국익도모를 위하여 유통기한표시로 표시방법을 일원화 하되, 제조·판매업 및接客영업자에게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진열·판매하거나 조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조자는 품목제조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는 품목별로 유통기간을 설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신청에 제출토록 하여 유통기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게 하며, 모

든 식품에는 반드시 사용 및 보존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냉동·냉장식품의 경우에는 그 보관온도를 표시하도록 하여 유통과정에 있어서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강함(제5조, 별표 2·별표 12 및 별표 13).

(다) 불량식품의 유통으로 인한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검사의뢰받은 식품을 검사한 결과 폐기처분대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및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통신하도록 하고 당해 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이를 지체없이 수거·폐기하도록 함(제15조제1항).

(라) 전통식품등을 지역특성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전통식품 또는 토산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별표 8의 업종별 시설기준에 불구하고 그 시설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작업장면적은 별표 8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함(제20조).

(마) 제조업소의 자율성과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조·유통중 부패·변질 우려가 적고 제조공정이 단순한 식품(건과자류등)의 제조는 종래의 품목제조허가제에서 품목제조신고제로 전환함(제24조 및 별표 9).

(바)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신설된 일정규모이상의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을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소매점 및 도매센타로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로 하고, 동일인이 같은 시설안에서 식유판매업, 자동판매기영업, 식용얼음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별로 각각 신고하도록 함(제27조 및 별표 8).

- (사) 신규接客업자 및 신규위생관리인에 대한 위생교육시간을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하여 이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제37조).
- (아) 대규모 식품판매업자,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 및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자에 대한 위생준수사항을 신설하여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보관·판매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을 도모함(제42조 및 별표 13).

호. 41次改正

- (1) 公 布 : 1991.12.28(보건사회부령 제885호)
- (2) 改正理由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다양화되고 있는 국민식생활형태 및 식품산업의 개방화, 국제화추세에 따라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임.
- (3) 主要内容
(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주로 약용의 원료로 제공되는 동·식물중 자가기준·규격을 받아 제조·가공식품의 원료로 제공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고삼·향부자등 13개 동·식물을 제외함(제4조 및

별표 1)

- (나) 제품선택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상표·회사라고 외에는 제품명과 혼합하여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을 제품명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함(제6조 및 별표 2).
- (다) 과대표시 및 허위광고를 규제대상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최고」, 「특」등과 같은 뜻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베스트」·「모스트」·「스페셜」 등의 외국어도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식품의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제76조).
- (라)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품검사대상에 새로 포함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검사수수료·검사용 시험재료의 채취단위 등을 정하고, 검사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제7조·제8조 및 제10조).
- (마) 제조·가공의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적은 김치·압착식용유·도시락·식용얼음·단순절단포장육 및 임가공업의 경우 품목제조허가나 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허가받은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품목제조관리를 하도록 함(제24조 및 별표 9).
- (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신청은 품목제조허가나 품목제조 신고수리를 할 수 없도록 함(제25조).
- (사) 조제분유에 관하여 신문·잡지·방송등을 통한 광고를 할 수 없도

록 하는 등 식품·첨가물 제조업
자 및 식품소분·판매·운반업자
의 준수사항을 보완함(제40조).

(아) 유흥접객영업자가 미성년자의 출
입을 허용하는 경우 및 18세미만

의 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보완함(제53
조).